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5회 정례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 기 창 의원 등 8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급식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서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내용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내 급식시설이 설지되지 않은 소방관서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은 물론 본연의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경북, 전남, 부산,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일부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타 시·도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취사인부 또는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11.17.~'21.11.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 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안정적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대도민 소방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